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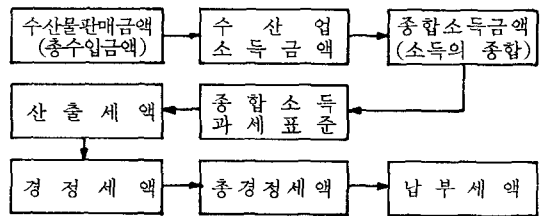
어업경영과 세무 (I)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획조사부 차장 고석환

목 차

1. 어선어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
2. 어선의 유지·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무처리
3. 인건비 지급에 대한 세무처리
4. 어구·어망비 지출에 대한 세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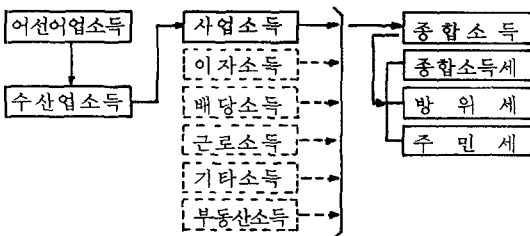
표 1. 종합소득세의 계산절차



1. 어선어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 어선어업소득은 사업소득

○ 어업을 경영함으로써 얻는 수산업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6가지 중의 하나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방위세와 주민세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 어선어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계산절차는 표 1 과 같다.

위 계산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산업소득금액”이며 수산업소득금액이 결정되면 그 이하는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절차이다. 따라서 어선에 의한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세무상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문이 수산업소득금액의 산출과정이다.

○ 과세소득 즉 수산업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장부에 의거

$$\text{수산물판매금액 (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text{수산업소득금액}$$

의 공식에 따라 수산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실지조사방법)이다.

둘째로는 정부가 정한 소득표준율에 의거

$$\text{수산물판매금액 (총수입금액)} \times \frac{\text{소득표준율}}{100} = \text{수산업소득금액}$$

의 공식에 따라 수산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추계조사방법)이다.

위 두가지 방법에서 어민들 특히 영세어민들에

게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세법에서는 첫째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둘째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 국세당국은 '84년 이후 장부의 강력한 보급과 지도를 권장하여 둘째의 방법으로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방법을 추방기로 하고 첫째의 장부기장에 의한 실지조사를 강력히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85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결정고시할 때에는 기업어선어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전년대비 10%~20%씩 대폭 인상하는 추계과세추방의 의지를 납세자에게 분명히 표명한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시행에 문제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우리어민도 이행해야만 하는 첫째의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코자 한다.

(2) 어선어업경영소득계산에 필요한

“필요경비”항목

○ 어선어업경영에 따른 조세부담의 기초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업소득금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산물판매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다. 여기서 수산물판매금액은 어선어업경영으로 획득한 수산물물 전부 양륙지수협에 위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매자료는 전액 과세자료로 발생되어 판매금액의 누락이나 착오는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위판수협의 판매자료를 그대로 장부에 기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의 기장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그리 수월치가 않다. 필요경비는 세무상 처리에 세법규정이 적용되고 또 기장방법도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다.

○ 어선어업에서의 필요경비 항목으로는 대충 다음과 같다.

① 어선의 유지·관리비: 연료비, 수선비, 보험료(공제료), 감가상각비, 어선관련지급이자 및 조세공과금

② 인건비: 선원임금, 주부식비, 후생비 등

③ 어구비: 어구, 어망, 용기대 등

④ 기타: 소모품비, 사무비, 판매비 등

이번호에서는 위 필요항목 중 어선의 유지·관리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겠다.

2. 어선의 유지·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무처리

(1) 연료비

○ 어선은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있다.

— 무동력선을 제외한 모든 동력선을 출어시키려면 연료가 필요하다. 연료로서는 현재 석유류가 그에 해당되는 바 현재 연근해어선이 사용하는 석유류는 일체 면세유류이다. 면세유류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 74조 및 제 78조에 의거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석유류를 말한다.

—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통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제의 일종이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석유류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경유: 9%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00%

그러나 특별소비세를 부담하는 석유류 중 어업선박용 석유류는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경유만이 이에 해당되고 그 외의 중유나 방커 A유 등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연근해어업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는 유종에 관계없이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에서의 면세는 일반 세금에서의 면세와 달리 그 효과면에서는 불완전면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상 불완전면세효과를 정책적으로 보완하여 완전면세의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어민들 모두에게 면세효과가 돌아가도록 조치하고 있다. 정부의 각별한 정책배려에 감사할 뿐이다.

○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어선과 공급절차는 법정화 되어 있다.

—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선박은 연근해어업용 선박과 수산업법 제 8조 제 13조 및 제 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어업에 사용하는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이어야 한다. 면세유류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어선의 범위는 '84년말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수산물가공부문 등 여러부문에서는 면세유의 공급을 간절히 요망하고 있다.

- 면세유류의 공급절차는 반드시 수협중앙회를 경유하여 공급된 것이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면세받을 수 있지 그 외의 절차를 거친 유류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 74 조 및 제 78 조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 어선유류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어선에 사용한 유류에 대한 연료비는 수산업소득금액 계산시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업년도말(매년 12월 31 일) 현재 어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고로 남아 있는 유류는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년도말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유류의 수량과 구입단가를 파악하여 이에 지출된 연료비 상당액을 계산한 후 이를 연료비에서 차감하여 연료비가 아닌 재고연료로 처리하였다가 그 다음해 동 재고유류를 실제로 어업경영에 사용한 시점에서 필요경비로 세무처리하여야 한다. 이 점은 뒤에서 설명코자 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에서의 선급비용처리와 같은 취지인 셈이다.

(2) 어선수선비

○ 어선수선비는 수산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어선을 취득하여 계속 출어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수선비 지출은 불가피한 것이다. 어선수선비가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에는 하등의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수선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따라 세무처리의 기준은 다소 달라진다.

- 어선을 취득한 후에 지출되는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유지(Maintenance), 수선(Repair), 개량(Improvement), 갱신(Renewal), 대체(Replacement) 등에 대한 지출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지출비용 중 세무처리에서 문제되는 것은 당해 지출이 어선의 "수선비(수익적지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본적지출"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다. 어선을 위한 추가지출을 이처럼 구분하는 것은 표 2 와 같이 세무처리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표 2. 세무처리 기준

구분 \ 기준	자산처리여부	필요경비인정	취득세부담
수선비로 처리될 경우	자산처리하지 않음	지출연도에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	부담없음
자본적 지출로 처리될 경우	자산으로처리하여 어선의 취득가액에 포함	내용연수에 따라 연차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부담발생

○ 세무회계상 수선비(수익적지출)와 자본적지출은 엄격히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

- 세무회계에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실무상으로 "수선비"와 "자본적지출"과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 89 조에서는 어민이 어선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농물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어선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어선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89 조에서는 수선비와 자본적지출을 구분하는 실례로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을 대체하고 재해(災害)를 입은 어선에 대한 외장(外裝)의 복구, 도장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지출은 수선비로 하고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를 하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어선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에 지출된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처리에서는 그 구분이 다소 애매한 경우가 많다.

(3) 보험료 및 공제료

○ 어선어업경영의 위험과 보험

사업을 경영하노라면 예기치 못한 무수한 위험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업경영자는 여러가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어선으로 먼 바다까지 출어하여 조업하는 경우에는 해상위험이 언제 찾아올 지 예상 못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해상보험이나 어선공제에 가입한다.

○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어선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해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보험료나 공제료는 현재 기업의 사회적지위에 비추어 볼 때 필요경비로 보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보험료나 공제료가 지출될 때 그것이 곧 필요경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업수익에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료나 공제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필요경비화하는 것이냐 하는 점이 문제이다. 즉 보험료 등이 어업경영의 필요경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기간비용으로 대응시킨 것인가 아니면 어선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인가를 판단하여 그 과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어업경영상 필요경비가 되는 것이다.

－ 어선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보험료나 공제료는 지출 즉시 필요경비화 할 수 없고 어선의 취득가액을 구성하여 그의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계상 필요경비화한다.

－ 그리고 어선에 대한 손해보험, 어선공제 등을 계약함에 있어서는 당해보험계약의 효과까지 미치는 보험기간이 있는바 이 때에는 그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경과일수별로 필요경비화하는 것이다. 가령 보험계약을 3월 1일자로 체결하되 향후 1년간을 보험계약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지불보험료의 10/12 (3월~12월) 만이 필요경비가 되고 나머지 2/12는 선급비용으로 처리되어 다음 사업년도의 필요경비로 배분된다.

(4) 조세공과금

○ 조세공과금의 지출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경비로 인정됨이 원칙이다.

－ “조세”란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고 “공과금”이란 지방자치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조세 이외의 공과금을 가리킨다. 조세공과금에는 본래 일방적으로

과징되는 것이므로 행정상의 수수료나 사용료, 특허료 등과 구별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조세공과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조세공과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강제적인 납세의무가 따르는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공과금 중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 다소 있다. 현행세법이나 세무회계이론상 시인, 부인여부가 논의되는 조세공과금을 중심으로 논술해 보자.

○ 어선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세공과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어선에 드는 조세로서는

• 어선취득시의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 재산세와 소방공동시설세(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선이 있는 항 포구내에 선적이 있는 어선에 한함)

• 면허세

•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방위세, 소득세할 주민세부담 등이 있고

－ 어선에 드는 공과금으로서는

• 상공회의소 회비,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이 있다.

－ 위 조세공과금 중 어선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어선의 원가로 처리하고(다만 수출사업을 하고 영세율적용을 받기 위하여 면세 포기한 어민소유의 어선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때에는 원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어선의 취득가액에 합산시킨 후 감가상각에 의하여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시킨다. 그러나 재산세나 소방공동시설세 또는 면허세는 당해 사업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된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기일내에 납입치 않음에 따른 가산금 등 행정벌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 즉 소

득세나 방위세, 주민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는 소득(잉여)의 처분사항이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5) 감가상각비

○ 어선의 감가상각은 필연적이다.

어선 등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시간의 경과나 그 사용에 따라 그 가치가 감가된다. 따라서 어선의 취득가액은 그 사용기간내에 매사업년도마다 감가되는 금액을 추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배분하게 되며 이러한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어선어업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수산업의 손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종합소득에서의 과세소득과 종합소득세액도 달라지게 되므로 세법에서는 어선의 감가상각에 관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 어선의 감가상각에 필요한 계산요소는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년수” 및 “상각방법”으로서 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자의적인 감가상각비 계산에 의해서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막아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고자 감가상각제도상 다음 다섯가지의 특색을 두고 있다.

첫째 임의상각제도를 취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 스스로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세무계산상 감가상각비를 추인하지 않는다.

둘째 상각비는 최고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경리한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즉 사업자가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에 따라서 세법에서 정하여진 상각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내에서만 필요경비의 산입이 인정된다.

셋째 자산별로 내용년수와 잔존가액이 세법으로 정하여져 있다.

네째 감가상각의 방법을 정형화하고 있다.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이것이다.

다섯째 특수한 경우 특별상각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 수산청고시제 86 - 10호

어선규모별 집어등의 광력 및 선원수의 기준 (기준톤수 : 총톤수)

어 선 규 모		집어등의광력 (kw)	승선선원수 (명)
구 톤 수	톤 수		
40 톤미만	30 톤미만	52 이하	23 이하
40 톤이상 50 톤미만	30 톤이상 40 톤미만	60 이하	25 이하
50 톤이상 70 톤미만	40 톤이상 50 톤미만	72 이하	28 이하
70 톤이상 90 톤미만	50 톤이상 70 톤미만	76 이하	29 이하
90 톤이상 110 톤미만	70 톤이상 80 톤미만	84 이하	30 이하
110 톤이상 130 톤미만	80 톤이상 100 톤미만	88 이하	31 이하
130 톤이상 150 톤미만	100 톤이상 115 톤미만	96 이하	33 이하
150 톤이상 190 톤미만	115 톤이상 145 톤미만	100 이하	34 이하
190 톤이상	145 톤이상	108 이하	36 이하

비고 : 구톤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을 부칙 제 3 조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측정된 총톤수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시행 : 1986. 6. 1)